개방형직위운영지침

제 정 2017.12.28.

개 정 2018.08.22.

개 정 2020.01.17.

개 정 2020.10.13.

개 정 2021.04.26.

개 정 2023.02.27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개방형 직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 및 해제) ①사장은 필요시 2급 부장급 이상 직원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다.<개정2018.8.22>

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·특성 등을 감안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요구되는 직위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4.26>

- 1. 전문성
- 2. 정책결정 · 집행 과정의 외부 참여
- 3.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
- 4.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관리능력
- ③개방형 직위 지정의 해제는 해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④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의 성과계약을 사장과 체결한다. 단, 내부 경영계약을 체결하는 직위는 내부 경영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고, 내부 경영계약 체결 직위의 하부 직위는 업무목표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.<신설 2021.4.26>
- ⑤개방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선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이나 직무대리로 운영할 수 없으며,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4.26>
- 제4조(개방형 직위 추천위원회) ①사장은 개방형 직위 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개방형 직위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위원회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·면접 등 심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고,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부서장 또는 부장으로 한다.<개정 2020.10.13>
- ③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상으로 하며, 위원장 및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10.13>
- ④위원회는 공사 2급 이상의 임·직원 및 전체 위원수 절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외부위원은 법조계·경제계·언론계·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20.10.13>
- ⑤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별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2개 이상의 개방형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- 1.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<신설 2020.10.13>

- 2. 개방형 직위 선발 계획 및 심사(서류 및 면접심사 등)에 관한 사항<개정 2020.10.13>
- 3.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추천 결정<개정 2020.10.13>
- 4. 개방형 직위 재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<신설 2020.10.13>
- 5. 기타 법령으로 정한 사항 및 위원회 우영에 필요한 사항<개정 2020.10.13>
- ⑦위원회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심사 대상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한다.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<개정 2020.1.17., 개정 2023.02.27>
- ⑧개방형직위 후보자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신설 2023.02.27>
- ⑨위원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<신설 2023.02.27> ⑩제척되거나 회피, 기피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결원 발생으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, 사장은 그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을 대체할 다른 위원을 선임할 수있다.<개정 2020.1.17., 2023.02.27>
- ①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- 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-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
- 3. 질병,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- 4. 인권침해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5.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- 6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
- 7. 제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8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<신설 2023.02.27>

- ⑫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⑬공사의 임직원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, 비상임이사 등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.<신설 2020.10.13>
- ⑭개방형 직위 임용 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은 기밀유지, 윤리준수, 비위행위 적발 시 책임 등에 대해서약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하며, 공정한 임용 절차 및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<신설 2020.10.13>
-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해야 하며, 필요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.<신설 2020.10.13.>
- 제5조(개방형 직위 후보자 모집방법) ①개방형 직위에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사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부의 경험·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고,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(개방형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)자는 제외하며,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.

<개정 2020.10.13., 2021.4.26., 2023.02.27>

②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, 알리오, 워크넷 등에 공고하되, 그 모집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0.13>

-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.
- 1.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
- 2. 위원회 심의 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
- 3. 사장이 위원회 추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
- ④내부 직원이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경우 해당 보직기간 중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 <신설 2021.4.26>
- 제6조(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) 사장은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모집 기구를 구성·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, 학계 및 관련 단체, 인사혁신처(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)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추천받은 자를 다른 응모자에 비해 우대할 수 없다.<개정 2021.4.26>
- 제7조(개방형 직위 심사 절차 및 방법) ①개방형 직위 선발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심사나 실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서류·면접·필기·실기심사 방법은 「채용절차에 관한 지침」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10.13>
- ②위원회는 직위별로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응모한 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심사 대상자 수를 결정하며, 서류심사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한다.
-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며, 3배수 이내로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사장에게 추천한다. 다만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다.
-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 방법 및 평가 등 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담당 본부장이 정한다.<개정 2020.10.13>
- ⑤개방형 직위의 심사 절차 및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기밀유지, 윤리준수, 비위행위 적발 시 책임 등에 대해 서약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하며,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<신설 2020.10.13>
- 제8조(제출서류) 개방형 직위에 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지원서(별지 제1호 서식)
 - 2. 자기소개서(별지 제2호 서식)
 - 3.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
 - 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
- 제8조의2(제출서류 반환) 제8조에 명시된 제출서류의 반환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.<신설 2020.10.13>
- 제9조(결격사유) 임용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.
- 제10조(임명) ①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개방형 직위별 최종 1인을 선정하여 임명한다.
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11조(개방형 직위 임용신분 등)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외부직원은 계약직으로 하며,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은 별정직관리요령에 준한다.
- 제12조(임기)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2회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연구분야의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전단의 조건이 해당될 경우에는 상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1회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20.10.13>
- 제12조의2(재임용 평가) 제12조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방법은 재직기간 중 인사평정, 내부 성과평가, 면접평가로 하고, 최종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자에 한해 적용하며, 개방형 직위 재임용 평가

항목 및 배점은 별표1과 같고, 면접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20.1.17>

제13조(해제 시 전환) 내부에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직원이 개방형 직위 임용 해제 시에는 임용전후 직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의 신분으로 전환한다. 이 경우 근무연수, 승진연한 등은 반영된다.

<신설 2020.10.13>

- 제14조(공개모집 예외) 사장은 제5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개방형 직위 추천 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직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.<신설 2020.10.13.>
- 제15조(인사상 불이익의 금지) 내부직원은 누구나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 <신설 2023.02.27>
- 제16조(사적이해관계자) 주관부서 임직원이 개방형직위 추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들과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사 「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. <신설 2023.02.27>
- 제15조(준용규정)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사 제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8.8.22>

이 지침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.28>

이 지침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0.13>

이 지침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4.26>

이 지침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02.27>

이 지침은 202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

개방형 직위 재임용 평가 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배점	비 고
인사평정	30점	최근 2년간의 인사평정 적용
내부성과평가	30점	최근 2년간의 내부성과평가 적용
면접평가	40점	
계	100점	

1. 평가항목별 적용 기준

- 가. 인사평정 : 해당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를 70%, 해당자의 최근 2년간 다면평정 평균점수를 30%로 하여 합산한 후, 평가배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.
- 나. 내부성과평가 : 해당자의 최근 2년간의 내부성과평가 평균점수를 평가배점을 기준으로 환산한다.
- 다. 면접평가 :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2. 인사평정 및 내부성과평가에 있어서 최근 2년간의 점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점수를 100%로 적용한다.
- 3. 인사평정을 적용할 수 없는 직위에 대해서는 내부성과평가 및 면접평가로 적용하고, 각각 산출한 점수를 내부성과평가 40점, 면접평가 6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며, 내부성과평가 관련 경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직위에 대해서는 직상위 소속장의 내부성과평가점수를 적용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지 원 서

구	'모 직위명										응모	.번호					
					성	명	(द	한글)				(영급	<u>7</u>)				
사진부착 (3.5cm × 4.5cm)				인 적	생년	월일											
		사 항		주	소												
				전	화			-		폰			이메일]			
		フ	<u></u> 간					학교명	<u> </u>		전·	고	소	재지		학위	
학	학																
력 사																	
항																	
병역사항	병역	필,	,	병역	ᅾ특례,			면제(면제사	유:)			
사 항	군별						계	급			복	무기간					
	-	종 류			취득	·년월	일		외	국어	명		종류		점수	또는 수준	<u> </u>
자																	
격 및								어									
면 허						학											

_	_		
ᄀᅼ	근	λ	ᅡ핤
_′∂′	9	/\	r %

근무처	근무부서	직위	담당업무	근무기간 (연월기재)	퇴사사유

□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						

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니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: (서명)

자 기 소 개 서

※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. (분량 :A4용지 5매 내외)

직 무 수 행 계 획 서

※ 한국가스기술공사의 회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계획, 추진전략,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. (분량 :A4용지 5매 내외)

서 약 서(위원)

본인은 개방형 직위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위촉기간 중에 위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안건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평가결과 등 임용 전형에 관련된 정보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.
- 2.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으며,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- 3. 성별, 신체조건, 용모, 학력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이나 차별을 배제하며,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 등은 공사 감사부서,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겠습니다.
- 4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심사의 회피를 신청할 것이며, 심사수행 중 사실 인지 시에도 즉시 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.

(임용 과정 혹은 최종 합격 이후라도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제척사유가 밝혀질 경우 해당자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)

- ① 지원자와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이거나, 과거 또는 현재 지원자의 지도교수 또는 담임교사인 경우 및 동일 회사내 동일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등 지원자와의 이해관계가 직·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
- ② 지원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

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「청탁금지법」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, 청렴 문화 조성과 윤리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위 서약자 소속:

직책 :

성명: (서명)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

서약서(진행요원)

아래 본인은 2020년 반기·(분기) 직 개방형직위 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임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고,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윤리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, 보안관계 제 법규 사항 등을 위반하여 불미스러운 행위를 유발할 경우에는 「청탁금지법」 등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, 청렴 문화 조성과 윤리 준수를 위해 적극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소속	직급	성명	서명

년 월 일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